

귀하께서 이 서신을 다른 언어로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http://www.fema.gov/individual/privacy> 을 방문하거나 1-800-621-FEMA (3362) 혹은
청각장애인용 전화 1-800-462-7585 에 전화하십시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1998 년과 2004 년 사이에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들)로 인해 FEMA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FEMA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우스 플로리다 선-센티넬에 귀하의 재난 피해 주택의 주소를 제공하도록 FEMA에게 지시하는 최근 법원 명령에 관해 알려 드리기 위해 저희는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귀하가 2004년도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4 개의 허리케인 중 1 개로 인해 재난 보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 명령은 또한 FEMA에게 뉴스-프레스와 펜사콜라 뉴스 저널에게 귀하의 주소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 플로리다 신문사들이 FEMA에게 도움을 요청한 귀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한 재난 보조 정보를 제공하도록 FEMA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FEMA는 제공된 전체적 보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신문사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FEMA는 재난 신청자의 이름 혹은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생활권법이 그러한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은 이름과 주소를 얻기 위해 FEM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FEMA가 신청자의 집 주소만을 신문사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원 케이스는 뉴스 프레스 대 DHS/FEMA, (U.S. App. LEXIS 14817 (2007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귀하는 FEMA가 귀하의 사생활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FEMA는 신문사들에게 귀하의 재난 피해 거주지의 주소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이름 혹은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적인 정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을 위해 이 서신을 보관하십시오. 귀하께서 질문이 있는 경우, 1-800-621-FEMA (3362) 혹은 청각장애인용 전화 1-800-462-7585 에 전화하여 FEMA에 연락하십시오.